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171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일자 : 2022.

제출자 : 달성군



## 1. 제안이유

-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을 권역별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영어교육 접근성 강화 및 지역교육 인프라 향상으로 맞춤형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.

## 2. 근거법령

- 가.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진흥 조례 제4조
- 나.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
- 다.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시행규칙 제3조

## 3. 사업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
- 나. 위탁대상 사무 :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사무 전반
  - 사업대상 : 군민(7세, 초등학생, 장애인)
  - 사업내용 : 수준별 원어민 실용영어 회화 수업 운영
- 다. 위탁내용
  - 원어민 강사 및 한국인 보조 강사 파견
  - 교육 과정 구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
  - 반 편성, 수강 모집, 수강생 관리 등 운영 전반
  - 그 외 사업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
- 라. 위탁기간 : 2023. 1. ~ 12.
- 마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
- 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900백만 원

○ 산출근거

| 강 사 구 분 | 인<br>원 | 연 시수  | 시간당<br>강사비 | 총 강사비      | 비 고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계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900,000천 원 |                |
| 원어민 강사A | 10명    | 720시간 | 55천 원      | 396,000천 원 | 중부권 6명, 북부권 4명 |
| 원어민 강사B | 4명     | 720시간 | 70천 원      | 201,600천 원 | 남부권 4명         |
| 결혼이민자   | 1명     | 96시간  | 45천 원      | 4,320천 원   | 장애인복지관         |
| 한국인 보조  | 18명    | 720시간 | 23천 원      | 298,080천 원 | 총괄 보조강사 4명 포함  |

※ 원어민 강사비는 권역별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

#### 4. 향후일정

- 가. 2022. 10. : 2023년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추진계획 수립
- 나. 2022. 11. 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로 수탁기관 선정
- 다. 2023. 1. : 중부권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
- 라. 2023. 3. : 북부권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(예정)
- 마. 2023. 7. : 남부권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(예정)

붙임 : 관련규정 1부. 끝.

## 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

### 제4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-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·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 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###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민간위탁”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###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 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

### 제3조(의회동의)

-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.
- ③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.